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,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(안 제20조제2항)

- 1)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(버스·택시)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, 시정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재입법예고(2021.11.5. ~2021.11.16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1호 중 “제외한다”를 “제외한다) 및 제28조에 따른 자동차
대여사업을 등록한 자(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일부라도
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) ① (생 략)	제20조(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(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<u>제외한다</u>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한다</u>) 및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(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일부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<u>있는 경우에만 한한다</u>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2